#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양유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8. 8.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6. 14.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은 56,761,3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761,3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C의 상속 지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차2302 약정금 사건으로 '원고와 C이 2013. 7. 10. D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80,000,000원을 C이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C이 사용한 돈 중 40,000,000원을 D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C이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15.에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21.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1. 12. 7.에 확정되었다.

나. E이 2018. 5. 6.에 사망하여, 배우자인 F이 자녀인 C, 피고, G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E의 상속인들은 2018. 6. 14.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울산 남구 H 임야 1587㎡, 울산 남구 I 임야 99㎡, 울주군 J 답 1045㎡ 중 1/2 지분, 울주군 K 임야 36893㎡는 G의 단독 소유로 하며, 예금 합계 222,953,702원과 보험금 1,112,310,172원은 피고와 G가 공동으로 수령하고, 피고와 G는 F에게 682,000,000원, C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에 따라(다만 등기원인은 2018. 5. 6.로 신청함) 2018. 6. 18.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6. 18. 접수 제8663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12.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을 체결할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21. 1. 1.을 기준으로 545,000,000원이고,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2023. 2. 16.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56,761,342원이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주채무자, C이 보증인으로서 D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증채무자에 불과한 C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지급명령의 대상인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33041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6. 7. 7. D에게 대여금 12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점, 위 공정증서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대여금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C이 달리 원고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할 만한 관계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C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인 점,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가 2017. 5.경 원고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이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자신은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C,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던가 위 협의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⑴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8.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L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⑵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21. 1. 1.을 기준으로 54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 부분은 121,111,111원(=545,000,000원×2/9)으로 산정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6,761,34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범위는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한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은 56,761,342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6,761,342원과 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 목 록

1. 울산 중구 M

대 404㎡

2. 울산 중구 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1층 45㎡

1층 157.04㎡

2층 99.47㎡ 끝.